□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 "국제종합대회"라 한다)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유치신청도시의 선정에 관한 권한이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있거나 유치신청에 NOC의 보증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회를 말한다. 2. '유치희망도시'란 국제종합대회의 국내유치를 희망하여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유치신청도시' 선정을 신청한 단일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말한다. 3. '유치신청도시'란 체육회의 선정절차를 거쳐 제1호의 국제스포츠기구에 한국을 대표하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4. '유치도시'란 국제종합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유치신청도시 중 유치(후보)도시로의 권한을 부여한 지자체를 말한다. 5. '개최도시'란 유치도시 중 주최 국제스포츠기구의 절차에 따라 개최지로 선정되어 개최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말한다. 6. '대회유치위원회'란 유치희망도시, 유치신청도시 및 유치도시가 대회 유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7.~9.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 "국제종합대회"라 한다)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유치추진도시의 선정에 관한 권한이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있거나 유치신청에 NOC의 보증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회를 말한다. 2. '유치희망도시'란 국제종합대회의 국내유치를 희망하여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유치추진도시' 선정을 신청한 단일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말한다. 3. '유치추진도시'란 체육회의 선정절차를 거쳐 국제종합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4. '유치도시'란 국제종합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유치추진도시 중 유치(후보)도시로의 권한을 부여한 지자체를 말한다. 5. '개최도시'란 유치도시 중 주최 국제스포츠기구의 절차에 따라 개최지로 선정되어 개최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말한다. 6. '대회유치위원회'란 유치희망도시, 유치추진도시 및 유치도시가 대회 유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7.~9. "현행과 같음" 10. '간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란 국제종합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규모, 비용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말한다.	▪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 ▪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 ▪ 유치신청도시 명칭 및 정의 변경. 유치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신설 ▪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 ▪ 제4조제1항의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정의 추가
제3조(기본원칙) 국제종합대회의 국내유치가 올림픽운동의 확산 및	**제3조(기본원칙)** 국제종합대회의 국내유치가 올림픽운동의 확산 및	

현행	개정(안)	비 고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스포츠 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해 유치신청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생략" 2. 체육회는 국제종합대회 개최 역량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유치신청도시를 선정하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치희망도시 간 경쟁은 공정해야 하며, 유치희망도시를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자체 또는 위원회는 대회 유치 및 개최 관련 업무수행에 관하여 체육회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스포츠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치추진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체육회는 국제종합대회 개최 역량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유치추진도시를 선정하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체육회는 국제종합대회의 원활한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 협력한다. 4. 유치희망도시 간 경쟁은 공정해야 하며, 유치희망도시를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자체 또는 위원회는 대회 유치 및 개최 관련 업무수행에 관하여 체육회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자구 수정 ▪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 ▪ 유치절차 운영을 위한 문체부 협력 문구 신설 ▪ 문구 신설에 따른 호 번호 변경 ▪ 문구 신설에 따른 호 번호 변경
제4조(개최계획서의 제출 등) ① 유치희망도시는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3. "생략" <신 설> ② 제1항제1호의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생략" 4. 해당 대회 유치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 조달계획 5.~12. "생략" ③ 유치희망도시는 해당도시에 대한 체육회의 평가활동 및 제반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로 부담금 5,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제4조(개최계획서의 제출 등)** ① 유치희망도시는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간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의 국제종합대회 유치관련 의결서(결의안, 동의안 등 포함) ② 제1항제1호의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해당 대회 유치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 조달계획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 충족여부 포함) 5.~12. "현행과 같음" ③ 유치희망도시는 해당도시에 대한 체육회의 평가활동 및 제반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로 부담금 5,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 유치희망도시 제출서류 추가를 통한 체육회 선정절차 운영의 정책타당성 확보 ▪ 개최계획서를 통한 국고지원 사업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현행	개정(안)	비 고
부담금은 체육회 수입금으로 처리되며, 유치신청도시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부담금은 체육회 수입금으로 처리되며, 유치추진도시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
제5조(선정절차) ① 유치신청도시는 국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제5조(선정절차)** ① 유치추진도시는 국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정한다.	▪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 ▪ 자구 수정
② 국제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② 국제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치희망도시의 유치 계획의 타당성, 정책적 적합성 및 국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국제스포츠기구 선정절차를 준용하여, 현행 선정절차 상 주요 의사결정기구(국제위원회, 이사회, 총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해 체계 개선
③ 이사회는 유치희망도시에 대한 국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한다.	③ 이사회는 국제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치추진도시 선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시 유치희망도시로부터 유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이사회가 제출한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유치신청도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④ 총회는 이사회가 제출한 유치추진도시 선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심의·의결한다.	
1. 각 유치희망도시 설명(45분) 후 질의응답(15분) : 각 유치희망도시의 공식대표는 6명으로 하고, 참관인의 수는 체육회가 정한다.	1. 유치추진도시 선정(안)에 따른 해당 유치희망도시의 유치계획 발표(45분) 및 질의응답(15분) : 유치희망도시의 공식대표는 6명으로 하고, 참관인의 수는 체육회가 정한다.	
2. 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	2.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보고	▪ 자구 수정
3. 대의원의 무기명비밀투표	3. 대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4. 결과 발표	4. 투표결과 발표	
5. 유치신청도시와 체육회의 협약서 체결	5. 유치추진도시와 체육회의 협약서 체결	▪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
제7조(평가위원회의 임무) ① 평가위원회는 유치희망도시가 제출한 대회개최계획서를 평가편람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7조(평가위원회의 임무)** ① 평가위원회는 유치희망도시가 제출한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평가편람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서류 구체화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9조(평가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평가위원회는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치희망도시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국제	**제9조(평가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평가위원회는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치희망도시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국제	

현행	개정(안)	비 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가 유치희망도시에 추가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종자료를 접수한 날을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한다.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가 유치희망도시에 추가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부득이하게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장 필요기간을 명시하여 국제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제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 보완자료 제출에 따른 보고서 최종 제출일 변경에 대하여 국제위원회가 승인·관리
제10조(협약서) 체육회와 유치신청도시 간에 체결하는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 당사자는 이 규정에 따른 협약서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협약서)** 체육회와 유치추진도시 간에 체결하는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 당사자는 이 규정에 따른 협약서를 준수해야 한다.	▪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유치신청도시로서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에 제출할 대회개최신청서를 사전에 체육회에 제출, 승인 획득	2. 유치추진도시로서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에 제출할 대회개최신청서를 사전에 체육회에 제출, 승인 획득	▪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
3.~7. "생략"	3.~7. "현행과 같음"	
	8. 유치추진도시 선정 이후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에 협의	▪ 위반 수준에 따른 제재조치 단계 구체화
	9. 이 규정 제13조에 따른 제재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할 의무	
8. 기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의	10. 기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의	
〈신 설〉	**제11조(정부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유치추진도시는 대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 심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 유치추진도시는 체육회와 협의하여 해당 조건을 반영하여 제4조제1항 제1호의 개최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정부 심의 결과 유치추진도시의 대회 개최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하거나 유치추진도시가 유치계획을 철회한 경우 체육회는 국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유치추진도시의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선정절차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 고
<신 설>	**제12조(국제스포츠기구 신청서 제출)** 유치추진도시는 제11조에 따른 정부 승인을 득한 후 국제종합대회의 유치 신청 관련 서류를 체육회를 통해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절차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조항 신설
제11조(제재) 체육회는 제2조2호부터 7호까지의 지자체 또는 위원회가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으며 제재절차 및 세부 제재사항은 국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1. 유치희망도시의 유치신청도시 신청 반려 2. 유치신청도시의 유치신청도시 자격 철회 3.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관할 시·군·구)에 5년 범위 내에서 국제종합대회, 2년 범위 내에서 국내종합대회 및 종목별 전국규모 대회 유치 신청 자격 제한	**제13조(제재)** ① 체육회는 국제스포츠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회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국제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재를 행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자체 또는 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제2항의 지자체 또는 위원회가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국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유치희망도시의 유치추진도시 신청 반려 2. 유치추진도시의 유치추진도시 자격 철회 3.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관할 시·군·구)에 5년 범위 내에서 국제종합대회, 2년 범위 내에서 국내종합대회 및 종목별 전국규모 대회 유치 신청 자격 제한 ④ 제3항의 중대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육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치추진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국제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유치추진도시 선정 당시 제출한 제4조제1항 서류의 주요 내용을 체육회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평가 또는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유치추진도시에 대한 제재 추진 근거 및 제재 기준·처리절차 세부화

현행	개정(안)	비 고
	미칠 수 있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5. 제10조의 협약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재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경비부담)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종목단체의 현지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체육회가 유치희망도시 부담금에서 지급한다.	**제14조(경비부담)**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종목단체의 현지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체육회가 유치희망도시 부담금에서 지급한다.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제12조의2(평가위원 등의 준수사항) 평가위원회 위원, 종목단체의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유치신청도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유치희망도시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평가위원 등의 준수사항)** 평가위원회 위원, 종목단체의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유치추진도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유치희망도시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의 국제종합대회 개최도시 선정규정 및 절차를 준용하되, 불분명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의 국제종합대회 개최도시 선정규정 및 절차를 준용하되, 불분명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신설>	**부 칙 (2026.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치신청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른 유치추진도시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2조에 따른 지자체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이후의 절차 및 행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